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춘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34

발의연월일: 2020. 8. 18.

발 의 자:최춘식・김희곤・지성호

권영세 · 박수영 · 김기현

권명호 · 윤두현 · 김선교

정희용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새마을금고, 신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,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혜택을 바탕으로,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, 동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.

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 인한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,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.

이에 2020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(안 제10조제1항, 안 제87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, 안 제167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0년"을 "2023년"으로 한다. 제87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·제2호 중 "2020년"을 각각 "2023년"으로 한다.

제167조 중 "2020년"을 "2023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(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 관련 감면 등) ① -----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 어업인[영농조합법인, 영어조합 법인(營漁組合法人) 및 농업회 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에서 같다]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(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)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 ----2023년-----감한다. 다만, 중앙회,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・영어자금・영림자금(營 林資金)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87조(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 제87조(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 면) ①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면) ① -----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(중 앙회는 제외하며,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"신용협동조합"

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.

- 1. 신용협동조합이 「신용협동 조합법」 제39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 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한다.
- 2. 신용협동조합이 「신용협동 조합법」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 1일까지 면제한다.

3. (생략)

②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(중앙회는 제외하며, 이하 제1호 및 제2호 에서 "새마을금고"라 한다)에

<u>.</u>
1
- <u>2023년</u>
,
2
<u>2023년</u>
3. (현행과 같음)
②

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.

- 1. 새마을금고가 「새마을금고 법」 제28조제1항제1호의 업 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 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한다.
- 2. 새마을금고가 「새마을금고 법」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 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 1일까지 면제한다.

3. (생략)

제167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제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 「조세 특례제한법」 제72조제1항을 적 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<u>2020</u>

1
<u>2023년</u>
2
<u>2023년</u>
<u>.</u>
3. (현행과 같음)
∥167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
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)
<u>2023</u>

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지방세법」 제 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 구하고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.

<u>년</u>
·.